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교육부에 다중밀집시설 안전교육 및 학교안전 등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고, 교육부와 중앙교육연수원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인력(3·4급 1명, 4급 1명)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또한 교육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24일까지 2년 연장하여 운영하고, 신규로 사분위지원팀을 설치하여 2024년 2월 27일부터 2027년 2월 26일까지 3년간 운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x. x. ~ x. x.)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⑥ 인재정책실에 인재양성정책과·인재양성지원과·학술연구정책과·인재선발제도과·대학규제혁신추진단·지역인재정책과·지역혁신대학지원과·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대학경영혁신지원과·평생직업교육기획과·평생학습지원과·중등직업교육정책과·고등직업교육정책과·청년장학지원과 및 사분위지원팀을 둔다.

제6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⑦ 각 과·팀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제21항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를 삭제한다.

제6조제2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㉔ 사분위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임시이사 선임 및 해임 관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지원
3.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분쟁 사학의 정상화 심의 지원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정책연수과장 및 연수지원협력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

는 서기관으로, 교원능력개발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6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둔다.

별표 1 중 총계 “637”을 “640”으로 하고, 별정직 계 “5”를 “4”로 하며, 청년정책 담당(6급 상당) “1”을 “0”으로 하고, 일반직 계 “545”를 “549”으로 하며,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6”을 “15”로 하고,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1”을 “32”로 하며,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편사연구관 “192”를 “194”로 하고, 행정주사·통계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기상주사·보건주사·식품위생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편사연구사 “135”를 “137”로 한다.

별표 4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을 신설하고, 서기관 “2”를 “1”로 한다.

별표 9 표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4조제6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2월 26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4년 6월 25일부터 2026년 6월 24일까지 존속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사분위지원팀은 2024년 2월 27일부터 20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보좌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사분위지원팀장이 인재정책실장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사분위지원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청년장학지원과장이 보좌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인재정책실) ① ~ ⑤ (생략)	제6조(인재정책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인재정책실에 인재양성정책과·인재양성지원과·학술연구정책과·인재선발제도과·대학규제혁신추진단·지역인재정책과·지역혁신대학지원과·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대학경영혁신지원과·평생직업교육기획과·평생학습지원과·중등직업교육정책과·고등직업교육정책과 및 청년장학지원과를 둔다.</u>	⑥ ----- <u>인재양성정책과·인재양성지원과·학술연구정책과·인재선발제도과·대학규제혁신추진단·지역인재정책과·지역혁신대학지원과·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대학경영혁신지원과·평생직업교육기획과·평생학습지원과·중등직업교육정책과·고등직업교육정책과·청년장학지원과 및 사분위지원팀을 -----.</u>
⑦ 각 <u>과장</u> 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⑦ - <u>과·팀장</u> 은 ----- ----- -.
⑧ ~ ⑳ (생략)	⑧ ~ ㉑ (현행과 같음)
㉑ <u>청년장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㉑ ----- -----.
1. ~ 25. (생략)	1. ~ 25. (현행과 같음)
26. <u>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u>	<u><삭 제></u>

및 운영 지원 27. 임시이사 선임 및 해임 관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지원 28.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분쟁 사학의 정상화 심의 지원 <신 설>	<삭 제> <삭 제> ㉔ 사분위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임시이사 선임 및 해임 관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지원 3.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분쟁 사학의 정상화 심의 지원
제14조(중앙교육연수원) ① ~ ② (생 략) ③ 정책연수과장 및 연수지원협 력과장은 서기관으로, 교원능력 개발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 구관으로 보한다. 제24조(한시정원) ① 삭 제 ② ~ ⑤ (생 략)	제14조(중앙교육연수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정책연수과장 및 연수지원협 력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 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 -----. 제24조(한시정원)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 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 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6 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 을 교육부에 둔다.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1]

교육부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관련)

직급별	현행	개정안	증감
총계	637	640	+3
·	·	·	
별정직 계	5	4	-1
·	·	·	
청년정책 담당(6급 상당)	1	0	-1
·	·	·	
일반직 계	545	549	+4
·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6	15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1	32	+1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편사연구관	192	194	+2
행정주사·통계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기상주사·보건주사·식품위생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편사연구사	135	137	+2
·	·	·	

[별표4]

중앙교육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19조제3항 관련)

직급별	현행	개정안	증감
·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신설)	0	1	+1
서기관	2	1	-1
·	·	·	

[별표9]

교육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4조 관련)

현행	개정안
·	·
<신 설>	6. 제24조제6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2월 26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1